

광주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1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현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희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합6015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가. 선택적으로,

- 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이하 처음 기재하는 것 외에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1. 13.자 부동산 신탁원부변경계약1) (이하 ‘이 사건 신탁원부변경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에 대한 신탁원부 및 신탁수익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 지정을 취소한다.

또는,

2) J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원부변경계약에 의한, D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1,200,000,000원, E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220,000,000원, F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250,000,000원, G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150,000,000원에 대하여 각 피고와 체결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탁원부변경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J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B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위 청구취지 나.항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및 나머지 제1심피고들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항소하였다가 위 항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제1심피고들 중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서 본 이 사건 청구취지 나.항 부분(원고의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이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 부분(그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 B”을 “B”으로, “피고 D”를 “D”로, “피고 E”을 “E”로, “피고 F”을 “F”로, “피고 G”를 “G”로, “피고 I”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0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는 J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J의 유일한 책임재산인데, J와 B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9. 5. 9.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D(우선수익권 금액 1,200,000,000원), E(우선수익권 금액 220,000,000원), F(우선수익권 금액 250,000,000원), G(우선수익권 금액 150,000,000원)를 지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98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J와 B은 2019. 11. 13. 이 사건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D, E, F, G에서 피고(우선수익권 금액 1,820,000,000원)로 변경하였다.

결국 D, E, F, G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원부변경계약에 의하여 D, E, F, G로부터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전득하였는바,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피고는 악의의 우선수익자에 해당한다.

이때 위탁자의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제5항). 따라서 악의의 우선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위탁자인 J에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10. 29.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98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10. 29. 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중 “피고들”을 “피고”로, “피고 D”를 “D”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하5행 내지 10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8조 제5항 전문은 같은 조 제1항의 신탁 설정 행위가 사해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러한 사해신탁의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해신탁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권 양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8조 제5항 후문은 위와 같은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0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신탁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되는 ‘사해신탁을 안 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10쪽 4행 아래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 11쪽 6행의 각 “취소원인”을 각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6행의 “그러나” 다음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983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에는 그 작성일이 “2019. 10. 25.”로 기재되어 있는바(을 제7호증), 원고는 적어도 위 2019. 10. 25.경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2019. 10. 25.경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시점에서 J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이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시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항 중 “피고들”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D”를 “D”로, “피고 E”를 “E”로, “피고 F”를 “F”로, “피고 G”를 “G”로, “피고 I”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쪽 3행 아래, 14쪽 2행 아래에 각 “이러한 법리는 사해신탁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쪽 12행의 “이는”부터 14행까지를 “이는 신탁법상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와 달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신탁법상 수익권 양도청구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쪽 4행의 “갑 제6, 7, 10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4쪽 하3행을 “4) 사해신탁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5쪽 1행, 하3행, 17쪽 5행, 하9행, 18쪽 4행의 각 “사해행위”를 각 “사해신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5쪽 4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위탁자가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 목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쪽 하6행, 하5행의 “J가 피고 E, F, G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를 “J가 E, F, G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8행의 “양수할 당시” 다음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0쪽 하4행 아래에 “이러한 법리는 사해신탁의 성립을 전제로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사해신탁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권 양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0쪽 하3행 내지 21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1. 13. D, E, F, G로부터 J에 대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7억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위 D 등에게 그 양수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898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11. 13. 피고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 양수가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양수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의 가액은 18억 2,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7억 원에 양수한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의 양수도 시점 및 저가 양수도에 관하여, 위 D 등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가액에 따라 제2순위 우선수익권의 회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D 등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위와 같은 설명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성 등을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전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우선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1쪽 2행을 “6) 양도의 범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1쪽 9행 아래에 “이러한 법리는 사해신탁의 성립을 전제로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사해신탁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권 양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양도의 범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쪽 10행의 “사해신탁의 경우”부터 11행의 “(신탁법 제8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1쪽 하10행의 “1,472,917,808원”을 “1,512,452,054원”으로, 하9행의 “172,917,808원”을 “212,452,054원”²⁾으로, 하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 9. 7.까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1쪽 하5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다만, 이 사건은 피고만이 항소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1,472,917,808원의 범위 내에서 위 양도의 의사표시 및 양도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양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박성남, 판사 김준영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복구 대 1446㎡

[도로명주소]

광주 복구

2. 위 지상

동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사무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303.88㎡

2층 302.42㎡

3층 302.42㎡

4층 302.42㎡

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 차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30.5㎡

1층 129.37㎡

2층 193.47㎡

2층 23.25㎡

3. 광주 복구 답 661㎡

4. 광주 복구 답 55㎡

합,

별지 2

신탁원부상 우선수익권

신탁원부 [] 의 변경목록

변경목적	변경원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 붙임 1의 우선수익자가 변경되어 신탁원부기재사항을 변경함.	2019년 11월 13일 변경계약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기재와 같음.

제2조 [변경내용]

가. 신학계막시 특허사항 별첨 1의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별첨 1의 2. 신학원본의 우선수익자의 변경	제2순위 성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주 소 : 광주광역시 경상구 [] 우선수익권금액 : 금왕십이역원동 (₩1,200,000,000-)	제2순위 성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 우선수익권금액 : 금왕십이역원동 (₩1,820,000,000-)
	제2순위 성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 우선수익권금액 : 금이역이천원동 (₩220,000,000-)	
	제2순위 성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주 소 : 전라남도 경진군 [] 우선수익권금액 : 금이역오천원동 (₩250,000,000-)	
	제2순위 성 명 : [] 법인 등록 번호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 우선수익권금액 : 금왕역오천원동 (₩150,000,000-)	

끝.

1) 2021.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면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9. 11. 29.자 부동산 신탁원부변경계약'은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감안할 때 '2019. 11. 13.자 부동산 신탁원부변경계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 13억 원 × 0.05 × (213/365 + 2 + 250/365), 원 미만 버림.